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1조 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) 제 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라살자산운용(주) (이하 '회사')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"관련 법규"라고 한다)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- ① 집합투자업자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②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③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- ⑤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며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 (법 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
- ⑥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

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- ⑦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됨.
- ⑧ 투자자문 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자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서 자문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-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④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계산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
제6조 (설명 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 (투자광고)

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(법 249조의 2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 (공시)

회사는 법 제 58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제9조 (협회에 대한 통보)

회사는 법 제58조 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기준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